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정초안작성상의 문제성과 기본원칙*

최 장 호 **

— <목 차> —

- I. 서 론
- II. 상사중재의 본질과 특성
- III.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정초안 작성상의
문제성
- IV. 중재규정초안에 고려되어야 할 기본원칙
- V. 결 론

* 이 논문은 2004.9.4. 한국중재학회 남북상사중재 정책세미나 및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논문입니다.

** 단국대학교 경상대 교수

I. 서론

최근 남북측대표사이에 합의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와 그에 따른 후속합의인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발효를 앞두고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정초안작성 등 남북상사중재가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우리측 중재규정 초안안이 발표되고 이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 제시되는 등 우리 측 중재규정초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남과 북은 지난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남과 북은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며 1988년 7월 7일 남한정부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통해 남북간의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한과 교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어 1991년 12월 14일 남과 북의 대표에 의해 서명된 남북기본합의서는 민족내부교류로서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그 후 2000년 6월 15일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남북공동선언이 있었으며 동 선언에 의거 남과 북은 2000년 12월 16일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사이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합의서,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이들 4개의 합의서는 2003년 8월 20일에 발효되게 되었다.

남과 북은 위의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합의서에 의거 2003년 10월 12일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으며 또한 이를 교환하여 발효단계에 있으며 합의서에 따라 합의서가 발효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남과 북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중재규정에 대한 쌍방의 초안을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앞으로 구성이 될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쌍방의 중재규정초안을 기초로 중재

규정을 제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측 중재규정 초안을 준비하는 것은 남북상사중재절차와 남북상사중재제도를 신설하는 기초가 된다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상사중재는 분쟁당사자가 동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할 것을 서면으로 합의한 상사분쟁사건과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 규정된 상사분쟁사건을 관할하도록 되어 있다. 남북상사중재는 이와 같이 상사분쟁사건과 투자분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제도이나 이는 소송에 대체하는 분쟁해결제도인 ADR제도의 도입 또는 개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남북사이의 사회분쟁 해결시스템의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남북상사중재는 일반 중재와는 달리 당사자사이에 중재합의가 없더라도 당사자사이의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1조 및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제7조 제1항 참조). 그러하다면 이러한 유형의 중재는 이론상 어떤 종류의 중재에 해당하며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북상사중재제도는 남측과 북측에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상사중재제도를 배제하고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상사중재제도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의한 상사중재는 기존의 남과 북의 중재제도를 배제하고 새로운 상사중재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중재는 어떤 종류의 중재이며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탐구해 보기로 한다. 그리하여 제2장에서는 상사중재의 본질과 그 종류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규정초안작성상의 문제성을 그리고 제4장에서는 중재규정초안에 고려되어야 할 기본원칙을 탐구하여보기로 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체제가 다른 남북관계라는 점을 의식하여 신설되는 상사중재제도의 기준이 되고 새로운 중재제도가 순조롭게 발전하고 점차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하여 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측 중재규정의 초안과 관련하여 중재기관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절차와 주체 그리고 중재규정제정시 고려되어야 할 기본요소(기본원칙)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II. 상사중재의 본질과 특성

1. 상사중재의 본질

상사중재는 상거래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합법수단으로 일반실업계나 상거래업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중재이다.

중재란 본래 다양한 사회와 다양한 문화의 보편적인 제도이며 또한 하나의 지적현상이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그들로부터 신뢰와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공정한 사람에 의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공평한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와 욕구의 소산이다. 따라서 중재는 사회의 절실한 필요에 의하여 발생하는 보편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¹⁾. 이와 같은 중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자치(當事者自治)의 원칙이나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에 입각한 자주적 분쟁해결방법으로²⁾ 당사자들에 의하여 창설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³⁾.

또한 중재(仲裁)란 사적재판(私的裁判)이다(Arbitration is private adjudication). 사적(私的)이란 비정부적(非政府的)이라는 것을 뜻한다.

1) Jerzy Jakubowsky, "Reflections on the Philosophy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The Art of Arbitration」,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82, p.72.

2) 최장호, 상사분쟁관리론, 도서출판 두남, 2003., p.207.

3) Gabriel M. Wilner, Domke on Commercial Arbitration, Callaghan, 1984, p.1., Robert Coulson, Business Arbitration,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1982, p.6.

중재의 본질은 바로 국가법원에 대체(代替)하는 사적부문(私的部門)이라는 것이다⁴⁾(the essence of arbitration is that it is a private sector alternative to government courts).

중재는 계약상중재와 비계약상중재의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의무는 계약이나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다. 중재를 하여야 할 의무가 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그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판사의 판결에 대한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당사자는 중재계약에 의하여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비계약상중재는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비계약상중재는 일반적으로 그 권리에 대한 침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비구속적이어야 한다⁵⁾.

한편 상사중재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상사중재의 특성

상사중재(商事仲裁)의 특성⁶⁾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평화적 분쟁해결방법(平和的紛爭解決方法)이라는 점이다. 인류 문화가 발달되지 못하고 국가조직이 정비되지 못하였던 시대에는 사권(私權)에 대한 침해가 있더라도 권리자 자신의 자력구제(自力救濟)에 의하는 수밖에 없었다. 권리자 자신의 자력구제방법은 강자(強者)에게는 유리하고 약자(弱者)에게는 불리하였으며 때로는 연속적인 분쟁을 유발시키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중재는 국가 내지 재판제도가 확립되

4) Stephen J. War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est Group, 2001, p.19.

5) *Ibid.*, p.20.

6) 최장호, 전게서, pp.211-212. 참조.

기 이전에 복수나 자력구제에 대신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방법으로 등장하였다.

그 후 오늘날과 같은 사법재판제도하에서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하나 중재인은 엄격하게 법률에 구속되지 않고 상거래실정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판단하거나 자기 자신의 양식(良識)에 따라 판단하면 되므로 경직적인 법 적용에서 벗어나 분쟁당사자간에 적대감정을 유발시키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송에 있어서는 양당사자가 승소(勝訴)를 위하여 총력전을 펼치며 극단적인 감정대립으로 까지 치닫게 되는 것이 보통이나 중재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양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 우의적인 분쟁해결이 모색되어 소송은 투쟁적인 분쟁해결방법인데 반하여 상사중재는 평화적인 분쟁해결방법⁷⁾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자주적 분쟁해결방법(自主的紛爭解決方法)이라는 점이다. 소송(訴訟)이 국가사법기관인 법원의 재판권에 의한 공권적(公權的)분쟁해결방법인데 비하여 상사중재(商事仲裁)는 분쟁당사자가 국가의 재판권을 배제하고 민간인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사적(私的)분쟁해결방법이다. 그리하여 상사중재는 국가의 법원이 아닌 민간인에 의한 자주적 분쟁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창설되는 중재법정인 자주법정(自主法廷)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에서의 중재는 주로 뉴욕으로부터 그리고 각종업계의 자주법정으로 발전하여 왔다⁸⁾.

셋째, 자치적 분쟁해결방법(自治的紛爭解決方法)이라는 점이다. 상사중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합법수단이다. 이렇듯 중재는 계약(契約)의 산물(產物)⁹⁾이며 중재제도의 법적 논리는 계약법(契約法)중의 한

7) Roland L. Kramer, International Marketing, South Western Publishing Co., p. 216.

8) 喜多川篤典, 「國際商事仲裁の研究」, 東京大學出版部, 1978, p.9.

유형(類型)¹⁰⁾이라는 것이다.

분쟁당사자(紛爭當事者)는 자신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사적자치(私的自治, Private Autonomy) 또는 당사자자치(當事者自治, Party Autonomy)의 원리에 입각한다. 그리하여 소송(訴訟)이 일반적·공권적·강제적·확일적 분쟁해결방법인데 비하여 중재(仲裁)는 당사자 스스로의 자치적 분쟁처리방식¹¹⁾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소송대체적분쟁해결방법(訴訟代替的紛爭解決方法)이라는 점이다. 중재는 화해, 조정 등과 같이 비사법적 분쟁해결방법의 하나이나 사법재판과 같은 구속력(拘束力)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중재법에서도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상사중재는 비사법적 분쟁해결방법으로 사법(司法)의 대체(代替) 또는 대안적(代案的) 제도¹²⁾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중재는 조정과 더불어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의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국내상거래분쟁 및 국제상거래분쟁의 해결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Ⅲ.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정초안 작성상의 문제성

1. 중재규정초안작성상의 선후문제

중재규정 또는 중재규칙이란 기관중재를 전제로 한다. 중재규정은

9) Alan I. Widiss, *Arbitration, Practising Law Institute, N.Y. 1979, p.127.*

10) 喜多川篤典, 前掲書, p.9.

11) 김일두, “중재제도활용의 극대화”,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1986.6, p.2.

12) Robert Coulson, *Business Arbitration,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1982, p.6.*

중재기관에서 그 기관 중재의 필요에 의해 제정되는 것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의 중재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중재규칙을 제정한 것이 이 바로 그 예이다. 중재규정이란 이렇듯 당해 중재기관의 중재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으로 당해중재기관에서 제정함이 합당하고 일반적이다. 중재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을 제정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의하면 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합의서 제19조 제4항 참조)고 하고 남과 북은 위원회를 구성하고(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14조 제4항 참조) 중재위원회는 중재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3조 참조). 또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규정의 제정에 앞서 남과 북은 이에 대한 쌍방의 초안을 교환하도록 되어 있으며¹³⁾ 남과 북은 각기 중재사무처리기관을 지정¹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규정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먼저 남과 북 각기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 총 10명으로 구성된 후 그에 의하여 제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남과 북은 또한 각기 중재사무처리기관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의 중재규정초안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구성된 후 중재규정제정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발효를 앞두고 우리측의 중재규정초안을 남북상사중재위원회구성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당연하다. 그러나 중재규정이란 중재기관이 당해중재기관의 중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우리측 상사중재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또한 우리측 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사무처리기관은 지정하지 않은 채 중재규정

13)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14조 제4호 참조.

14)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10조 제1호 참조.

초안만 먼저 작성한다고 한다면 이들 기관의 필요에 따르는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고 이는 순리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 중재규정초안작성주체 등의 문제성

상설중재에는 그를 관리하는 중재기관이 필요하고 중재기관은 중재 절차를 구체화하고 중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중재규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중재기관에는 기관중재에 필요한 그 중재기관의 중재규정이 있고 중재규정은 당해 중재기관에서 제정함이 당연하고 일반적이다.

지난 38년 동안 사기업주의(私企業主義)와 비국영무역제도(非國營貿易制度)를 기본으로 사설중재기관(私設仲裁機關)에 의한 중재제도를 시행하여 온 우리측의 상사중재제도와 이에 대한 인식과 현재로서는 사기업주의와 비국영무역에 익숙하지 않은 북한의 상사중재제도와 그에 대한 인식을 동일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북한은 1999년에 이르러서야 대외경제중재법을 제정하고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와 조선해사중재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무역, 투자, 봉사와 관련된 분쟁을, 조선해사중재위원회는 해상수송, 해난구조, 공동해손과 같은 분쟁을 심리 해결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에는 이와 같은 현대적인 중재기구가 있다할 수 있겠으나 근래에 이르러 신설되었다.

북한은 특히 남북경협이나 남북관계 등을 고려할 때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를 정부관장하에서 추진하고 시행하려고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와 더불어 북한은 남북상사중재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치논리나 정부차원에서의 해결을 추구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정의 경우 아직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위원회 구성 후에 대비하여 중재규정초안을 제출하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우리측 중재규정초안작성주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우리측, 즉 남한상사중재위원회와 중재사무처리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 경우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정부주도의 중재규정초안을 작성하는 방법과 민간주도의 중재규정초안을 작성하는 방법 등이 제시될 수 있다. 또한 만일 우리측 상사중재위원회도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이고 중재사무처리기관도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주도의 중재규정초안이 작성되었거나 작성된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3. 중재판정부구성시의 국제중재기구개입문제

남북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부구성에 국제중재기관을 개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중재기관의 중재절차, 특히 중재판정부구성이 제3자인 외부의 국제중재기구와 연계된 경우 이러한 절차와 방식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절차진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제10조 제4항)와 관련하여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의한 상사중재에서 중재인선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의뢰하여 중재인을 선정하는 방법을 중재규정초안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의 제기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중재인선정이 신속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무난하게 중재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

문이다.

만일 남북상사중재에서 실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의장중재인선정을 의뢰하는 경우 동 센터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선정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진행되고 있는 상사중재건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나아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대한 의장중재인선정의뢰여부는 중재판정부구성에 대한 타 중재기관의 업무협조보장여부와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의장중재인선정기관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1개 중재기관이어야만 하는가하는 문제가 있다.

4. 단수중재규정초안의 문제성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제14조 제4항)에 의하면 동 합의서가 발효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남과 북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중재규정에 대한 쌍방의 초안을 교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중재규정을 제정하고 또한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합의서 제3조 제3호). 이에 따라 남과 북 쌍방의 중재규정초안교환이후 남북상사중재위원회 단일의 통일된 중재규정이 제정될 것이다. 동 위원회의 중재규정은 쌍방이 제출한 중재규정초안을 기초로 쌍방의 협의 내지 협상의 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단수의 중재규정초안만을 준비하는 경우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정제정을 위한 쌍방의 협의 내지 협상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성이 있다.

5. 중재판정의 효력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의 문제성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제16조)에 의하면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해당지역 재판기관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하되, 그 특별한 사정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구속력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확정판결로서 강제집행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을 짐작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그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하게 규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남북양 자간에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IV. 중재규정초안에 고려되어야 할 기본원칙

1. 국제성의 원칙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정은 남북한간의 상사분쟁해결을 위한 절차규정이나 우리측 중재규정초안의 제정시에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규정제정시 협상에 대비하여 국내상거래기업과 투자자의 보호를 우선함은 물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일반원칙 등 국제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각국의 중재제도는 대체로 유엔 무역법위원회의 국제상사중재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이나 국제상사중재규칙(UNCITRAL Arbitration Rules)을 수용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각국의 중재법제는 대체로 통일화되어 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재법도 1966년 3월16일 제정 공포된 이후 1999년 12월 31일, 1985년에 제정된 유엔무역법위원회의 국제상사중재모델법이 대폭 수용 되어 전면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상사중재기관인 대

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과거의 상사중재규칙)도 1989년, 1993년, 1996년 개정시에 유엔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을 수용한 바 있다.

중재규정 등 중재법규의 국제화는 상사중재의 국제표준(global standard)화라고 할 수 있으며 남북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한 동질적인 인식과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상호이해와 신뢰의 폭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소송대체성(상사중재 외 알선 등 ADR개발)의 원칙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 의한 상사중재제도는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의한 제도신설의 취지나 배경 및 내용으로 보아 반드시 중재만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동 합의서는 상사분쟁해결에 대한 소송대체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 합의서에 의하면 남북간 상사분쟁해결의 원칙으로 우선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규정(제1조 참조)하고 있으며 상사중재위원회는 남북의 당사자사이 또는 일방의 당사자와 상대방의 당국사이에 경제교류, 경제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된 사무처리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규정(제3조 제1항 참조)하고 있어 남북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법원에 의한 소송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소송대체적인 분쟁해결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중재뿐만 아니라 조정 등 ADR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이전에 분쟁해결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알선기능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알선제도는 동 합의서의 “중재 또는 조정 및 그와 관련된 사무처리기능” 규정에서 사무처리기능에 해당하고 포함된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업무 중 알선업무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알선에 의한 해결 또한 그러하다고 볼 때 이를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알선업무의 개발을 배려함이 바람직하다.

3. 신속성의 원칙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상사중재(남북상사중재제도)는 남북간의 경제교류 및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통하여 남북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남북관계 개선 내지 발전에 기여하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속한 분쟁해결은 중재를 포함한 ADR제도의 장점이며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상사중재제도는 공정성과 더불어 신속성을 생명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상사중재를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온라인분쟁해결제도(Online Dispute Resolution)와 신속절차제도(Expedited Procedures)가 개발되어 있다. 온라인분쟁해결제도는 일반적으로 분쟁을 온라인(online)을 통하여 소송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에 의하여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ADR제도라고 할 수 있다.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와 온라인분쟁해결제도(ODR)의 주요한 차이는 양당사자사이의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기술의 역할에 있다¹⁵⁾.

분쟁의 해결과 정보기술의 결합은 온라인분쟁해결제도를 탄생시켰으며 그것은 돈과 시간을 구제하는 인터넷의 힘으로 ADR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배가시켰다. 남북상사중재는 원격지간 당사자사이의 중재라고 할 수 없고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ODR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상사중재제도에 있어서 ODR은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 하더라도 온라인 분쟁해결제도는

15) Colin Rule, Online Dispute Resolution for Business, Jossey-Bass, 2002, P.45.

오프라인 ADR제도에서 발전된 것¹⁶⁾이며 상황의 변화는 예측하기 어려워 이를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규정초안에 규정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됨이 바람직하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cyber) 알선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는 사이버 조정제도가 있다.

중재에 있어 신속절차(신속중재절차)란 상사분쟁을 중재절차상 일반 중재절차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는 간소화된 중재절차라고 할 수 있다. 미국중재협회는 이미 1971년 이 절차를 도입하였으며 스톡홀름상업회의소중재협회는 중재규칙과는 별도로 신속중재규칙을 제정하였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에서도 신속중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¹⁷⁾. 또한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규칙에서 신속절차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남북상사중재의 경우에도 소액상사분쟁의 경우에는 신속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중재규정초안에 반영함이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4. 구체성의 원칙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정은 그 하위규범의 제정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실무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중재규정은 시행세칙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하다.

중재규정제정에 있어 상호 체계가 다른 이질적인 남북관계라는 특수성과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는 것이라는 점 등은 중재규정의 구체성

16) Ibid., p.13.

17) 최장호, 전게서, p.402. 참조

과 상세성을 더욱 어렵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상적이거나 규정이 없는 것이 융통성 있게 해결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가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중재규정이 중재신청절차를 비롯하여 중재인 선정, 중재심문, 중재판정 및 집행 절차 등 중재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 중재절차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로 인한 다툼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남북상사중재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가능한 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정 초안은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모든 경우를 상정하여 제도를 완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명료성의 원칙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정은 남북간 체제차이에서 오는 법에 대한 인식이나 법해석상의 차이를 무시할 수 없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간과할 수 없다. 중재규정에 대한 내용이 분명치 않은 경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해석상 문제는 중재절차의 진행을 지연시키고 남북양측간의 또 다른 분쟁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따라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정은 어떤 규정보다도 명료하게 제정되어야 한다. 중재규정의 명료성은 우리 측 중재규정초안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6. 조화성의 원칙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정은 남북상사중재제도화의 근거법규 내지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법규범은 상하법체계를 구성하며 타법규범과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합의서의 내용은 중재판정부의 중재인 수(제10조 제1항)나 중재인선정(제10조 제2항), 중재판정의

구속력(제16조 제3항) 등에서 현행 중재법(제11조, 12조 제3항, 제35조 등)의 특례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우리의 중재법과 다르지 않다.

우리측 중재규정초안은 헌법을 비롯하여 타 법률(민사소송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등)에 저촉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특히 공서(公序)문제에 있어서는 남북의 입장이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7. 실현가능성의 원칙

중재규정이란 중재절차를 구현하는 준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내용은 당연히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남북상사중재의 중재규정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의 절차규정이므로 이에 따르지 않고서는 남북상사중재는 진행될 수 없다. 그리하여 중재규정은 실현가능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장벽이 많아 실현가능성은 더욱 중요하다. 중재판정부구성에서 중재인 선정을 제3의 국제중재기구에 의뢰하는 문제도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측 중재규정초안 또한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8. 호혜평등성

중재절차는 어느 당사자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되고 중재규정은 중재판정에서 뿐만 아니라 중재절차에 있어서도 일방에게는 유리하고 타방에게는 불리하게 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북상사중재제도는 상사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남북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자는데 뜻이 있으므로 더욱이 중재규정은 남북

쌍방이 호혜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이는 국익을 우선하는 외교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V. 결 론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정의 우리측 초안을 작성하는 문제는 남북상사중재제도의 기초가 되고 남북상사중재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만큼 중요하므로 다각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은 우리와 체제나 통치이념이 다르고 아직까지는 상품의 생산원가나 기업개념 내지 기업가정신 등이 우리와 같다고 볼 수 없고 법관념이나 사법제도, 중재제도에 대한 인식 또한 우리와 같다고 보기 어려우며 유사한 선례가 없어 중재규정초안작성은 더욱 어렵다. 그 외에 남북상사중재는 그 성격으로 보아 일반적인 임의중재¹⁸⁾라고 보기는 어렵고 강제중재성을 띄는 측면이 있다.

남북상사중재에서 우리측 중재규정초안작성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우리측 중재규정초안작성시 고려됨이 바람직

18) 임의중재당사자들의 임의적인 합의에 의하여 당해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만 가능한 중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중재라고 할 때는 임의중재를 일컫는다. 중재판정은 중재인의 판단을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것으로 받아드리기로 미리 합의한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강제중재(強制仲裁)란 분쟁을 분쟁당사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강요된 중재를 말한다. 강제중재의 다른 형태는 소액클레임의 중재인데 이것은 1952년에 설립된 미국 펜실바니아 중재제도에서 폭 넓게 이용되었다(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 Dictionary of Arbitration and its Terms, 1970, p.55). 대만은 증권교역법 제166조 제1항의 단서에 “증권상(證券商)과 증권교역소 아니면 본법에 의거하여 발생한 유가증권교역의 분쟁은 당사자간에 중재계약유무를 막론하고 모두 중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다(中華民國法務部, 法務部商務仲裁制度研討會實錄, 1995, p.12-13).

한 주요사항(원칙)들을 연구하고 초안에 이를 반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재규정초안작성시 우선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앞의 제3장에서 살펴본 중재규정초안작성시의 선후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재기관과 중재규정과 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정의 우리측 초안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남측(한)위원장1인과 위원4명을 미리 내부적으로 선정하여 남한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아가 그 위원회의 중재사무처리기관도 내부적으로 미리 지정한 후 그에 의하여 그 중재절차와 사무처리 등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재규정초안을 제정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이고 순리일 것이다. 중재규정초안작성에는 중재기관의 성격과 기능 그리고 중재실무경험이 중시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중재절차에 대한 실무경험은 중재규정초안작성에 크게 유익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작성된 중재규정초안안이 있다면 우리측, 즉 남측(한)상사중재위원회와 이를 위해 지정된 실무경험이 있는 중재사무처리기관에서 이를 검토, 수정하여 우리측 중재규정초안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또한 남측(한)상사중재위원회가 내부적으로도 구성되어있지 않다면 이를 구성하고, 중재사무처리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중재사무처리기관도 내부적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규정초안작성과 우리측 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 중재사무처리기관의 지정 등의 문제는 특수한 상사중재제도를 새로이 창설하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제도의 일환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상호 독립된 별개의 과제가 아니고 선후관계 및 표리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의 문제성은 중재규정초안작성주체 등의 관한 것이다. 상사중재의 본질은 사적자치(私的自治)이고 당사자자치(當事者自治)이며 상사중재가 민간주도(民間主導)가 아닌 정부주도(政府主導)인 경우 남

북상사중재위원회에 의한 상사중재는 결국 정치논리와 정치색을 배제하기 어렵게 되고 정부가 전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이게 되어 새로운 남북상사중재제도는 무의미하여질 수 있다. 더욱이 투자 분쟁과 관련하여 일방의 당국(국가)과 상대방 투자자(국민)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여 중재를 하는 경우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 중재에서는 결국 일방 당국이 타방 당국을 심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사태가 예상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상사중재는 가능한 한 비정부기관에서 주도함이 바람직하며 중재규정초안의 작성 또한 비정부기관에서 주도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우리측 상사중재위원회는 가능한 한 비정부인사로 구성되고 중재규정초안은 그 위원회 및 중재사무처리기관 등 비정부중재기구에서 작성함이 바람직하다. 상대방당사자가 복한이라는 것을 의식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리하여 더욱이 우리 측 중재규정초안의 작성주체는 우리측(남한) 상사중재위원회와 중재사무처리기관이 되고 또 이들 기구가 비정부기관의 성격을 띄고, 비정부인사로 구성되는 경우 정부의 책임이나 부담 등 정부관련성을 경감시키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만일 정부주도의 중재규정초안이 제정되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 중재기구에서 검토, 수정하도록 하여 최종안으로 확정하는 방법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새로이 창설되는 남북상사중재제도에 대하여는 우리측 관계자(관계: 법무부, 통일부, 산자부, 재경부 등, 업계, 학계, 중재기관 등)사이의 유기체적인 협조와 총화가 중요하며 부처이기주의나 행정편의주의가 작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는 중재판정부구성시의 국제중재기구의 개입문제이다.

남북상사중재에서 중재인선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모색될 수 있다. 그 하나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인단(중재인명부)에 제3국인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중재인을 포함시키는 방법이다.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에서는 남북 각각 법률 및 국제무역투자실무에 정통한 30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재인은 국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외국인중재인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중재인들에게는 공정한 직무수행이 보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어(제5,6,7조 참조) 의장중재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 둘은 국제중재기구에 의뢰하는 방법이다. 중재판정부구성에 대한 남북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협조를 받아 공정한 제3의 의장중재인을 선정하는 방법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재인선정방법을 중재규정에 구현하고 구체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사이에 중재인선정에 관한 업무협조협정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협조여부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이라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우리측 중재규정초안에 이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의장중재인선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기 보다는 사전에 위 센터에 업무협조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뒤 이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 셋은 중재인선정을 의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외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상사중재에 국제중재기관을 개입시키는 것은 남북상사중재의 극한상황에 대처하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유도하며 국제기준(글로벌스탠다드)에 접근 하도록 하는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와 타국민간의 투자분쟁에 관한 협약(와싱턴협약¹⁹⁾)에 의하여 설치되어 국가와 타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을 목적으로하는 투자분쟁국제해결센터(ICSID)에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중재판정부구성(의장중

19) 와싱턴협약은 1965.3.18. 작성되어 1966.10.14.발효되었으며 이 협약에 근거하여 체결국과 다른 체결국의 국민간의 투자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설립되었다(최장호, 상사분쟁관리론, 두남, 2003, p.244.)

재인선정)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즉 중재인선정이 지연된다거나 선정된 중재인이 중재인의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예비적으로 기업 대 기업 등 사적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에 적합한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중재법원 사무국에 중재인선정에 대한 협조도 고려될 수 있다.

넷째는 단수중재규정초안의 문제성이다.

앞으로 구성될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의 중재규정제정시 우리측 중재규정초안대로 중재규정이 제정된다는 보장이 없고 규정안에 대한 남북양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 이에 대한 협상과 양보 등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측은 중재규정제정을 위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의 남북쌍방의 협의 내지 협상과정에 대비하여 중재규정초안 외 예비안을 준비하거나 중재규정의 주요내용이나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중점 검토하여 제2의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1의 중재규정초안은 북한(측)상사중재위원회 상대방과의 협상에 대비하고 북측 초안을 예상하여 가급적 남한(측)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고 남한(측)투자자 및 상거래당사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규정하는 전략도 수립할 수 있다할 것이다.

다섯째는 중재판정의 효력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의 문제성이다.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판정의 효력발생을 거부 내지 제한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정하도록하고 있어 중재규정초안작성과 더불어 이에 대한 구체안을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본안에 관한 다툼 외에 이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중재합의에서 분쟁을 소송이 아닌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다는 합의만 하고 중재지나 중재기관, 중재규칙 등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이를 확정하기 위한 다툼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란 중재판정의 효력에 대한 예외로서 그 내용은 가급적 구체적으로 규정하되 열거적 제한사항으로 명시함이 또 다른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는 길이 될 것이다.

중재규정초안에는 국제성을 비롯하여 소송대체성(상사중재 등 ADR의 개발), 신속성, 구체성, 명료성, 실현가능성, 조화성, 호혜평등성 등이 반영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상사중재는 사적자치이고 사적인 요소가 그 본질인 만큼 남북상사중재는 상사중재의 본질에 충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이용되게 함이 바람직하다.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우리측 중재규정초안의 작성 등 남북상사중재의 추진은 현실적으로 남북경협이나 남북한관계라는 특수성을 전연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사중재의 본질을 크게 변질시키지 않으면서 정부의 정책의지가 자연스럽게 반영되도록 하고 정부기관은 최소한으로 이에 개입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것이다. 남북간의 새로운 상사중재제도를 신설함에 있어 우리측은 남북양자사이의 협상의 여지가 많은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장기적인 긴 안목으로 남북상사중재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상사중재는 남북간분쟁해결시스템으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으며 이는 타 부문에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남북간 당사자 외에 남북당사자와 관련된 기업의 처리문제도 함께 연구, 검토되어야 한다. 일례를 들면 개성공단에 남측(한) 기업만 입주하여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측기업과 관련된 기업이 입주한다거나 이해관계당사자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다수당사자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연구, 검토하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상사중재는 남북관계의 성격상 정치, 군사적 고려와 배경이 중시되어 남북상사중재제도의 시행은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될 수 있고 적지 않은 장벽과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남북관계의 특성상 원시안적인 긴 안목으로 꾸준히 차근차근 접근하고 추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김일두, “중재제도활용의 극대화”, 「중재」, 대한상사중재원, 1986.6.
- 최장호, 상사분쟁관리론, 도서출판 두남, 2003.
- 통일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2000.
- 中華民國法務部, 法務部商務仲裁制度研討會實錄, 1995.
- 喜多川篤典, 「國際商事仲裁の研究」, 東京大學出版部, 1978.
- Coulson, Robert Business Arbitration, American Arbitration, 1982.
- Jerzy Jakubowsky, “Reflections on the Philosophy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The Art of Arbitration」,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1982.
- Kramer, Roland L., International Marketing, South Western Publishing Co.
- Rule, Colin Online Dispute Resolution for Business, Jossey-Bass, 2002.
- Ware, Stephen J.,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West Group, 2001, p.19.
- Widiss, Alan I. Arbitration, Practising Law Institute, N.Y. 1979, p.127.
- Wilner, Gabriel M. Domke on Commercial Arbitration, Callaghan, 1984.
-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A Dictionary of Arbitration and its Terms, 1970.

ABSTRACT

Problems and Fundamental Principles in Drafting of Arbitration Rule of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South-North Korea.

Jang-Ho Choi

The Drafting of Arbitration Rule of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the South-North Korea is to be the basis of and important to the South-North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Therefore we should study and review carefully the drafting of Commercial Arbitration Rule of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the South-North Korea.

First of all, it's probable that the drafting of Commercial Arbitration Rule of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in South Korea should be written by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South Korea and Korean arbitral body after these organizations are established and appointed. Second, it's probable that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South Korea and the arbitral body in South Korea should be composed of private sector, not government officer mainly.

Third, it's not recommendable that we make the ICSID intervene in appointment of arbitrator(s) of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the South-North Korea when it's not agreed with between the South Korea and the North Korea. Forth, it's not recommendable that we, the South Korea write the only one South Korean draft of the Arbitration Rule of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the South-North Korea.

Key words: commercial arbitration, commercial arbitral body, arbitration rule, the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 of the South-North Korea, ICSID, the South Korea, the North Korea